

포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정 : 2022.3.3.

1차 개정 : 2023.4.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유치원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포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원은 포담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원은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로 163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 및 학년도·학기·휴업일

제4조(교육연한 및 학년도) 본원의 교육연한은 1~3년으로 하고,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5조(학기) 본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장이 정한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본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토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
 -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
 - 원장(학교장) 재량휴업일
- 제1항 각호 외의 휴업일은 원장이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 한다.
- 제1항 제3호의 방학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 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없이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유치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6. 원장은 제6항에 따라 유치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제10조의 수업일수에 포함 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제1항에 따른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정원

제7조(학급편제)

1. 본원의 학급편성은 일반 3학급, 특수 1학급으로 편성한다.
2. 본원의 일반학급은 같은 연령으로 편성하고 특수학급은 만3~5세 혼합연령으로 편성한다. 다만, 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혼합연령으로 학급을 편성 할 수 있다.
3. 인가학급 범위 안에서 오후 재편성 방과후과정 1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4. 본원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8조(정원)

1. 본원의 학급당 원아정원은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학급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2. 방과후과정의 학급당 정원은 경기도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4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제9조(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1. 본원의 교육과정은 국가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과 경기도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근거로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의 강조점을 반영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교육내용에 대한 방법 및 시간은 원장이 매년 교육과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3. 교육내용은 유치원 및 지역사회의 상황, 유아의 발달과 흥미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4. 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 이후에 유아들이 가지는 신체,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하루의 교육 활동이 균형을 이루도록 배려하며 놀이와 배움이 있는 돌봄 중심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경기도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5. 방과후과정 운영 시 방학 중 타 유치원 연계 행복한 울타리를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5장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 방법

제10조(수업일수)

1. 본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으로 운영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 ①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업일수의 10분의 1
 - ② 유아교육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업하거나 휴원하는 경우: 해당 휴업기간 또는 휴원기간
2.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방과후과정 운영일수는 방학 중 운영 포함 20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방학 중 방과후과정 신청 유아가 없을 경우 방학 중 미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시간)

1. 본원의 교육과정 수업시간은 일일 4~5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되, 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 계절,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 일일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은 원장이 정하여 운영한다.
3. 본원의 방과후과정 수업시간은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일일 8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수업 운영방법)

1. 수업 운영은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교육활동은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운영하고, 유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발표, 토의, 관찰, 실험, 조사, 견학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용한다.
3. 유익한 방송프로그램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할 수 있다.
4. 다양한 교수 매체를 활용하되, 가능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주는 실물자료를 활용한다.
5. 교실환경과 교재·교구는 계절, 주제, 행사 및 유아의 요구 등에 따라 적절히 재구성한다.
6.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인근 유치원, 학교와 협력교육, 학년 또는 학급을 달리하는 유아를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7. 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8.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등원 수업이 불가할 경우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관할청의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제13조(교외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 2

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체험학습 사전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후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의 유형과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외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 탐방, 친지 또는 가족 방문 등
- ② 유치원 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부모의 신청으로 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관련 활동, 외국어 체험활동, 외국 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활동 등
- ③ 감염병 심각 및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

2.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족동반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 ② 유치원 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 ③ 감염병 위기 경보 ‘관심, 주의’ 단계 - 연간 30일 이내
- ④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심각’ 단계 - 연간 40일 이내

제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

제14조(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당해년도 3월로 하되, 학급 정원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육일수 2/3 이상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도 입학이 가능하다.

제15조(입학자격 및 선발방법)

- 1. 본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 2. 본원의 선발방법은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처음학교로-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다.
- 3. 입학자격 및 선발방법은 당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유아모집·선발 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원의 유아모집·선발 계획에 따른다.

제16조(재입학)

- 1. 만 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 만 6세아 중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한 유아의 경우에는 유치원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 2. 퇴원한 유아가 재학 당시의 연령 또는 그 아래의 연령으로 입학할 경우 학급 정원 내에서 재입학 할 수 있다.
- 3. 재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2/3 이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7조(편입학)

- 1. 퇴원한 유아가 재학 당시 연령 보다 아래 또는 상위 연령으로 다시 입학할 경우

우 학급 정원 내에서 편입학 할 수 있다.

2.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2/3 이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전학)

1. 본원에서 타 유치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허가하며, 타 유치원에서 본원으로 전학을 희망할 경우 학급 정원 내에서 허가한다.
2. 전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2/3 이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휴학)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희망할 경우는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 후 휴학할 수 있다

제20조(퇴학)

1. 질병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학을 희망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원장에게 제출 후 퇴학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원장은 퇴학을 명할 수 있다.
 - ① 수익자 부담금 징수 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상 무단결석한 때
 - ② 질병 및 기타사유로 본인 및 다른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제7장 수료 및 졸업

제21조(수료 및 졸업)

1. 원장은 유아의 출석일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2.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3.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5세 유아에게 졸업증을 수여한다.
4. 원장은 당해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만3, 4세 유아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

제22조(수업료 및 입학금)

1.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서는 교육부령 및 경기도학교수업료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에 의한다.

제23조(기타 비용 징수)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경비를 포함한 기타 비용의 징수는 학부모의 견 수령 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9장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4조(학부모회 설치)

1.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치원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2. 초등학교 학부모회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제25조(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원장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다만,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제19조의 6에 따르고 구체적인 내용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한다. 다만, 학교통합 운영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유치원 운영위원의 기능) 본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 4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제22조의5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고 구체적인 심의사항은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한다. 다만, 학교통합 운영시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1장 규칙 개정 절차

제27조(규칙 개정 절차)

1. 규칙의 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유치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2. 규칙 개정안은 유치원(학교)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기타 규칙 개정안의 제안방법, 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시행규칙)

1.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유치원장이 정한다.
2.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